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4일, 김태선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선의원)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

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16)에 따라 ‘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보호지역 현황 정보 관리 및 대국민 제공 중이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현행법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연번	시스템명	구축·운영 목적	구축·운영내용	법적 근거
1	에코뱅크 (www.nie-ecobank.kr, 국립생태원 운영)	국내·외 생물·생태정보 교류 확대 및 대국민 생태 조사·연구자료 제공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생태통로 시설 정보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2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www.species.nibr.go.kr, 국립생물자원관 운영)	생물다양성정보 통합적 관리·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국가생물종목록,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생물(국가보호종, 환경부 지정관리종,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목록 등	생물자원관법 제5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되도록 하는 목표에 합의(쿤밍-몬트리올 GBF¹⁾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부는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 통합·공유를 통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 및 보호지역 통계·현황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5개 부처(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산림청, 국가유산청) 소관 16개 법률 29개 유형의 국가 보호지역 정보(한국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1) 참고자료1.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국가 보호지역 등²⁾ 정보 구축 현황]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42개소	344개소	382개소	504개소	574개소	1,499개소	1,744개소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³⁾
2,071개소	3,392개소	3,437개소	3,439개소	64,394개소	65,558개소	1,731개소

※ 출처: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호지역 정보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2) 환경부에 따르면, 보호지역 정보와 함께 자연공존지역(3개 유형)에 대한 정보도 동 시스템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 자연공존지역: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 문화적·영적·사회·경제적·기타 지역적으로 연관된 가치의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지-내 보전 성과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운영·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18, CBD COP14)

3) 환경부에 따르면, 보호지역 산정방식 변경(산림보호구역은 필지별로 계산하다가 2024년부터는 보호구역 1개당 1개로만 계산)으로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개소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임.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

없 음